

“과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”에 대한 검토의견

□ 검토의견

○ 법령적합성

동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규정중 수수료 부분은 삭제되어 저야 할 것임

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 규정에서 사용료는 법률용어로서 보통의미의 재물 사용대가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임

사용대차와 유사한 경우는 물론 학교 수업료, 병원 진찰료 등과 같은 서비스의 대가도 포함하는 것임

○ 내용 타당성

감면은 감액과 전액 면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7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규정은 감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보다 탄력적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됨